## 이천시 출산 '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여성보육과

제정 2023 · 4 · 6 조례 제192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산·양육 지원"이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립·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.
- 2. "출산축하금"이란 이천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고, 출생 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- 3. "가정"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 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- 4. "사용료 등"이란 이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·수강료·관람료·주차료·수수료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출산·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시민의 책무) 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공동의 책임을 인식 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·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법인·단체에서는 소속 구성원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배려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출산·양육 지원 업무) 시장은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의 지원
  - 2.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카드 발급 및 그 밖의 양육 부담 경감사업

## 이천시 출산・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- 3. 임신·출산·양육 가정의 일·가정 양립에 필요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지원
- 4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지원
- 5. 부부 공동 육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
- 6.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비용 및 홍보 지원
- 7.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
- 8. 방과 후 아동 보육 등 각종 돌봄서비스 지원
- 9.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지원 사업
- 10. 그 밖에 시장이 임신·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교육·홍보 등) 시장은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 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홍보물품 등의 제작·배부
  - 2.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
  - 3. 임신·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램
  - 4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교육
  - 5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 등
- 제7조(사용료 등 감면) 시장은 임신·출산·양육 친화 환경 도시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· 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) 시장은 출산의 장려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이천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  - 1.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
  - 2.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 인·단체 등
  - 3. 그 밖에 시장이 출산 및 양육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